

「2026년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 실증사업비 지원사업」 공고

「2026년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 실증사업비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실증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승인기업은 **2026. 10. 13.(화) 17:00**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. 09. 14.
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

1

사업목적

-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규제특례 지정기업의 실증부터 법령정비까지의 원활한 사업 수행 및 실증사업의 성공률 제고를 위한 자금 지원

2

사업내용

- **(사업명)** 2026년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지정기업 실증사업비 지원사업(하반기)
- **(지원대상)** 규제특례 승인기업 중 사업을 개시하고, 신청일 현재 실증특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중소·중견기업 사업자 및 비영리기관 (공기업 제외)
- **(지원기준)** 사업비의 최대 70%(최대 1.2억원), 협약 체결로부터 1년간 지원

구분	정부지원금 기준	민간부담금 기준
중소·비영리	총사업비의 70% 이하	총사업비의 30% 이상
중견기업	총사업비의 50% 이하	총사업비의 50% 이상

- **(사업비 지급)** 협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일괄 지급(필요시 2회 이상 분할 지급)

3

신청방법

- (접수기간) 2026.9.14.(월)~10.13(화) 17:00까지
- (신청방법) 이메일 신청(sandbox@keiti.re.kr)
 - ※ 메일 제목은 상반기 실증사업비 규제특례 확인번호 업체명으로 작성 바람
 - ※ 사업 안내서 및 신청 서류 양식 다운로드([에코스퀘어\(ecosq.or.kr\)](http://ecosq.or.kr)-환경인증 -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-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)
- (신청서류)
 - 규제특례 실증사업비 지원 요청서 및 첨부서류
 - 첨부서류 1) 규제특례 실증사업비 사용 계획서
 - 첨부서류 2) 사업자등록증
 - 첨부서류 3) 사업비 신청내역 증빙 서류
 - 첨부서류 4) 표준재무제표
 -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
 - 청렴이행각서(서약서)

4

추진절차

- 신청접수 → 적정성 검토 → 협약체결 → 실증사업비 지원

접수	사전검토	적정성 검토	협약체결
규제특례 실증사업비 지원 요청서 사업자	신청서류, 자격요건, 제한여부 검토 기술원	사업비 적정성 및 타당성 등 평가 전문가, 기술원	적정성 검토 결과 보완 및 협약 사업자-기술원

5

유의사항

◇ 안내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기술원의 해석에 따름

- 사업자는 지원사업 신청 전 기술원과 사전 상담 후 신청서 작성
- 신청서류는 모두 E-mail(sandbox@keiti.re.kr) 제출이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

- 신청 사업비는 사업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하며, 협약 사업비는 적정성 검토를 통하여 조정 가능
- 협약 체결 시 민간부담금 현금 입금 확인 및 정부지원금 이행(지급)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(요청기한 내 미제출 시 협약 해제)
 - ※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을 위한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함
- 사업비 계좌 및 카드는 별도의 법인통장을 통해 신규 발급·이용해 관리하여야 하며, 불가능할 경우 협약이 해약될 수 있음
 - ※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전 협의 후 사업비 계좌 개설
- 규제특례가 취소가 될 경우 협약이 자동 해약됨
- 당해연도 사업비 범위내에서 지급예정

6

문의처

- **(담당자)**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담당자
- **(연락처)** 02-2284-1791, 1792, 1790, sandbox@keiti.re.kr